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의무화〉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81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인구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의무화	2

I. 개요

1.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1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13.
- (3) 회 부 일 : 2025. 6.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Ⅱ. 검토 의견

1. 인구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

-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과 부대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외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② (생 략)	3분의 2 이내 ② (현행과 같음)
---------	------------------------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 199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가 규정되었음.
-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²⁾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규정되었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되었음.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³⁾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60개소 중 4.6%에 해당함.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60	21	439	61.5	55.9	175	364	8.0	12.3

* 자료: 보건복지부('24.12월 기준, 휴업한 산후조리원 제외)

-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 출산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사이에서 임산부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비용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부대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위하
여는 제15조의17제1항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운영이 국가의 사무이기도 한 것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3) p. 8.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고

4)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
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
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체 229개 지역 중에서 64개로 파악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대부분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서울특별시 (19개)	광진구(332,900), 동대문구(342,258), 중랑구(377,566), 성북구(423,045), 도봉구(301,859), 노원구(488,062), 은평구(459,248), 서대문구(301,313), 마포구(359,795), 양천구(428,554), 강서구(552,467), 구로구(386,218), 영등포구(372,874), 동작구(374,837), 관악구(479,176), 서초구(407,176), 강남구(556,506), 송파구(646,786), 강동구(497,190)
부산광역시 (2개)	부산진구(364,540), 해운대구(374,321)
대구광역시 (4개)	동구(340,886), 북구(411,434), 수성구(409,747), 달서구(520,358)
인천광역시 (5개)	미추홀구(416,570), 연수구(404,371), 남동구(482,743), 부평구(493,504), 서구(642,574)
광주광역시 (2개)	북구(420,553), 광산구(389,542)
대전광역시 (2개)	서구(461,085), 유성구(367,488)
울산광역시 (1개)	남구(304,375)
세종특별자치시 (1개)	세종시(392,211)
경기도 (16개)	수원시(1,191,227), 성남시(909,790), 의정부시(461,646), 안양시(563,488), 부천시(764,584), 평택시(601,708), 안산시(616,265), 고양시(1,064,185), 남양주시(730,182), 시흥시(515,521), 하남시(328,235), 용인시(1,091,194), 파주시(517,575), 김포시(485,305), 화성시(978,270), 광주시(397,076)
강원특별자치도 (1개)	원주시(362,195)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충청북도 (1개)	청주시(855,268)
충청남도 (2개)	천안시(661,615), 아산시(357,051)
전북특별자치도 (1개)	전주시(630,904)
전라남도 (0개)	-
경상북도 (2개)	포항시(490,140), 구미시(403,666)
경상남도 (4개)	창원시(995,372), 진주시(337,761), 김해시(532,333), 양산시(360,160)
제주특별자치도 (1개)	제주시(486,309)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기존에 발의된 인구 수를 기준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특정 인구 수 미만⁵⁾의 지역에 대한 의무화인데,

그 입법 취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에 의무화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안, 제2201209호, 김선민의원안 제2203455호)은 인구 30만 명 미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안, 제2201891호)은 인구 40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은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단순히 일정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는 지자체 사무에 대한 지원인 점, 민간시장 구축 가능성 등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산후조리원협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분만 취약지 등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설치 의무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신중 검토 필요(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

(단위: 명, m²)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면적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27	31	1,298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2023.12.	12	12	1,187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7.	28	28	2,883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2019.5.	13	13	1,498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023.5.	20	20	2,437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16.2.	13	15	765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2.	10	10	1,341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6.	8	8	825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2.	5	5	603
강원 양양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2024.5	7	7	1,638
충남 홍성군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2022.2.	8	9	580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5.9.	10	10	494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2018.5.	10	10	616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2019.6.	10	10	730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20.12.	16	18	797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3.	5	5	113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9.	8	10	707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	12	14	1,432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13	10	1,998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022.6.	8	8	52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2013.3.	11	15	548

*자료: 보건복지부